2026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FAQ 목록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신청자격	Q1. 연령(19~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5
	Q2.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언제부터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5
	Q3. 신청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와 월세 주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5
	Q4.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5
	Q5. 청년 가구의 기준은?	5
	Q6.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5
	Q7.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6
	Q8. 다른 월세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6
	Q9. 한번 파주시 월세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6
	Q10. 올해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
	Q11. 같은 주소지에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6
	Q12. 친구와 둘이 한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다 신청 가능한가요?	7
	Q13.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7
	Q14. 신청 기간에 월세 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7
	Q15. 실제 거주는 파주인데,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7
	Q16. 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7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신청방법	Q17.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8
	Q18.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8
	Q19.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8
	Q20. 신청 완료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8
제출서류	Q21.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9
	Q22.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9
	Q2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탈락되나요?	9
	Q24. 월세이체를 신청인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9
거주요건	Q25.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10
	Q26. 임대차계약이 없는 고시원이나 기숙사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10
	Q27.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10
	Q28. 전월세 환산율(4.5%)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10
	Q29.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나 부동산중개인 날인이 없고, 기존계약서에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Q30.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는데, 심사기간 중 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1
	Q31. 파주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파주시로 재전입하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1
	Q32. 월세지원 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11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소득재산 요건	Q33.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2
	Q34.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12
	Q35. 신청인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2
	Q36. 소득기준에 부모님의 소득도 포함되나요?	13
	Q37. 소득 반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3
	Q38. 일반재산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3
	Q39.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14
	Q40.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4
제외대상	Q41.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15
	Q42. 보증금 관련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15
	Q43. 임대차 계약을 부모님이 체결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15
	Q44. 타 시도에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고, 파주시로 이사왔습니다.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5
대상자 선정	Q45.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6
	Q46.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6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지원금 지급	Q47. 월세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17
	Q48.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7
	Q49. 10만원 이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17
	Q50. 월세를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Q51. 1년치 월세 또는 여러 달의 월세를 한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Q52. 26년 상반기 선정자인데, 26년 2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1월, 2월 이체증빙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18
	Q53.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18
	Q54.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이체확인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18
기타문의	Q55.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되나요?	19
	Q56.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 군입대하는 경우 중지되나요?	19
	Q57.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 가구원이 변경되어 형제, 자매 등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19
	Q58.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19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관련 FAQ(주요 질문 및 답변)

□ 신청자격 관련 Q&A

Q1 **연령(19~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A
-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 올해는 주민등록상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신청 가능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A
-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신청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와 월세 주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Q5 **청년 가구 기준은?**

A
-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 및 가구원(배우자+자녀+동일주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구성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 ○ 청년 본인 및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6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 ○ 본인 외 다른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7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상 동일) 주소가 파주시인 청년 대상이며,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8 **다른 월세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등 다른 월세지원금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신청일 전 다른 월세지원금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9 **한번 파주시 월세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과거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Q10 **올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요건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1 **같은 주소지에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서 상 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지분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하며,
별도의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분 50% 반영합니다.

Q12 **친구와 둘이 한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동거인은 가구구성에서 제외됩니다.

Q13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Q14 **신청 기간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마감일인 26. 7. 31. 18:00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서 상 입주일 이전에 전입신고만 하여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제 월세를 납부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Q15 **실제 거주는 파주인데,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기준 물건지 주소가 동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Q16 **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파주시 거주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로 무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로 확인되면 제외 처리

□ 신청방법 관련 Q&A

Q17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에서 '파주시'를 검색하셔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클릭 후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Q18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Q19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0 **신청 완료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 신청 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관련 Q&A

Q21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Q22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 제출서류는 PDF, JPG 등으로 저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Q2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탈락되나요?**

A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금액 등 기재)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대차계약인 경우 ①②③ 모두 제출
   ① 전대차계약서
   ②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③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Q24 **월세이체를 신청인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 월세를 이체한 사람의 명의가 신청인과 달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월세이체내역은 이체일자, 임대인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 가구구성원 또는 부모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거주요건 관련 Q&A

Q25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묵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등 연장 관련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묵시적 연장일 이후 발급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Q26 **임대차계약이 없는 고시원이나 기숙사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가능합니다.

○ 고시원은 입실확인서(보증금, 월세 확인, 거주기간 확인)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 제출 필요하며,

○ 기숙사는 거주기간 및 월차임이 명시된 거주확인서 등(납부금액 및 이체증빙 필요)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Q27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 월세 50만원 초과자는 전월세 환산율*에 따라 7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천만원×4.5%÷12개월 + 65만원 = 687,500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환산율(4.5%) = 기준금리(2.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Q28 **전월세 환산율(4.5%)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25년도 말 기준금리(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를 더한 비율입니다.

Q29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나 부동산중개인 날인이 없고, 기존계약서에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기존계약서와 새로운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Q30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는데, 심사 기간 중 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신청서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부동산중개인 날인)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주거기준(보증금 1억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부적합 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1 **파주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파주시로 재전입하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은 파주시 거주요건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파주시 외 타지역으로 전입신고 후 다시 파주시로 재전입하더라도 중지 사유입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월까지 월세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2 월세지원 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A

○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 관련 Q&A

Q3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이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금액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월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2,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
다만,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Q34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Q35 **신청인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 수 확인 후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금액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Q36 **소득기준에 부모님의 소득도 포함되나요?**

A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기준을 판정합니다.

○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부모와 별도로 되어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기준을 판정합니다.

Q37 **소득 반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을 소득 반영합니다.

○ 단, 건강보험 **자격 변동자**는 자격 변동 후 **부과액** 기준으로 반영

예시1) 11월 건강보험(지역→직장) 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 건강보험(직장) 부과액 11~12월 평균 금액 반영

예시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직장이 변경되어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 건강보험(직장) 부과액 10~12월 평균 금액 반영

예시3) 12월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피부양자→부양자)로 변경된 경우
: 건강보험(직장 부양자) 부과액 12월 금액 반영

Q38 일반재산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일반재산은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을 발급 후, 건축물과 토지가 있음이 확인되면, WETAX(http://www.wetax.go.kr)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량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조회/발급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단, 차량시가표준액은 차량 지분에 따른 금액 반영

Q39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

- **신청인의 일반재산이 없는 경우** WETAX((http://www.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기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발급하시면 됩니다.

Q40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소유가 확인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주택 유형 및 크기에 상관없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관련 Q&A

Q41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 임대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Q42 **보증금 관련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 **한국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지원 사업에 따라 **주택전세자금 대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Q43	**임대차 계약을 부모님 체결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신청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Q44	**타 시도에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고, 파주시로 이사왔습니다.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을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수혜가 종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관련 Q&A

Q45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 (1단계) **자격요건** 심사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파주시 **주소**지 및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파주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 **임대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기준 충족 여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충족 여부
-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등

○ (2단계) 자격요건 충족대상자에 한하여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심사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선정 기준)**
  ① 소득이 낮은 순 ② 관내 연속거주기간이 긴 순 ③ 연장자 순으로 선정

<심사기준표>

지 표	배 점	선 발 기 준				
소득기준	50	10	20	30	40	50
		120%이하	100%이하	90%이하	80%이하	70%이하
임차보증금 기준*	40	10	20	30	40	
		1억5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연속거주**	10	2	4	6	8	10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 보증금 + (월 임차임 × 12) ÷ 4.5%
** 연속거주 공고일 기준 역산

Q46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상·하반기 각각 선정인원은 60명으로,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1단계 심사통과 인원이 60명을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표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① 소득이 낮은 순 ② 관내 연속거주기간이 긴 순 ③ 연장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중지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선정 시 심사기준에 따라 후순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관련 Q&A

Q47 **월세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 월세 지급은 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 지급**합니다.
- 선정자에게 **분기별 지급신청 안내** 예정이며, 지급청구서와 이체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예시) 4월(1분기) 신청 시 : 1~3월 월세 이체증빙서류와 지급청구서를 제출
- 월세지급은 **선불, 후불 관계없이** 1월, 2월, 3월 이체 건만 인정됩니다.

Q48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 당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제외 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된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49 **1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 되나요?**

A

- 10만원 이하 월세는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 지원**되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관리비 포함 월세 9만원, 관리비 3만원으로 임대인에게 이체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9만원으로 계약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Q50 **월세를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체내역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현금으로 월세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이 기재된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과 월차임 납부확인서(분기별 공문 안내 예정)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51 **1년치 월세 또는 여러 달의 월세를 한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청구서** 및 납부한 **월세 이체내역**과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는 **월차임 납부 확인서**(내용 및 임대인 서명 날인 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52 **26년 하반기 선정자인데, 26년 7월에 월세 계약을 체결 후불납입하여 7월 월세납부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월세 지급은 분기별로 별도의 신청을 받아 청구서 및 월세이체증빙내역을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월세 선불, 후불 관계없이 분기별로 각 월 이체증빙내역을 확인 후 확인된 월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26년 7월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7월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최대 11개월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간 : 상반기 선정자(26.1 ~ 12), 하반기 선정자(26.7 ~ 27.6)

Q53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하여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 대리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첨부

Q54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이체확인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문의 Q&A

Q55 **월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 되나요?**

A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를 기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원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6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 군입대하는 경우 중지되나요?**

A

○ 월세지원을 받는 중 군입대 하게 되면 중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입대일)이 포함된 월까지 월세를 납부했으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57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 가구원이 변경되어 형제, 자매 등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거인은 가능합니다.

Q58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하시면 됩니다.
예시) “매월 임차료는 배우자 이○○에게 입금한다” 임대인 서명 날인
○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위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 서명 날인 할 필요 없으며, 선정된 이후 변경된 경우 위의 예시처럼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